

부산고등법원 2021. 10. 7 선고 2021나539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1. 10. 7 선고 2021나5391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19가합5150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진성

피고, 항소인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운 담당변호사 신동엽

변론종결 2021. 9. 9.

판결선고 2021. 10. 7.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19가합51501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1)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9. 체결된 매매계약을 235,139,219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는 원고에게 235,139,2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피고 B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7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9. 체결된 매매계약을 235,129,219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35,139,2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9행의 “제11 번”을 “제11, 12번”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들은 당심에서도, ① 원고 주장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고 항변하면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위 쟁점 사항들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준용, 판사 최 환, 판사 최희영

별지